

부산지방법원 2017. 6. 27 선고 2016가단31260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7. 6. 13.

판결 선고2017. 6. 27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59,704,951원 및 그 중 159,704,652원에 대하여 2016. 3. 22.부터 2016. 5. 16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0. 30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. 11. 11. 접수 제32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'C'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'보증내역표'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1	D	85,000,000	2013. 12. 12.	2016. 12. 9.	일반자금대출	부산은행 사상역지점
2	E	85,000,000	2014. 5. 8.	2016. 5. 6.	일반자금대출	부산은행 사상역지점

나.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'대출내역표'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부산은행(이하 '부산은행'이라고 한다)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

1	D	85,000,000	부산은행 사상역지점	2013. 12. 18.	100,000,000
2	E	85,000,000	부산은행 사상역지점	2014. 5. 9.	100,000,000

다.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,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,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6. 2. 1. 이후 연 10%이다.

라. 피고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업체를 휴·폐업하여 2016. 1. 19.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2016. 3. 22.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산은행에 아래 '대위변제내역표'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.

1	D	2016. 3. 22.	80,000,000	91,016	80,091,016
2	E	2016. 3. 22.	80,000,000	708,196	80,708,196
합계	160,000,000	799,212	160,799,212		

마. 원고는 2016. 3. 22. 회수한 1,094,560원을 아래 '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표' 기재와 같이 2013. 12. 12.자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구상채권에 충당하였고, 위 회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99원(= 1,094,560원 × 10% × 1일 / 365일, 원 미만 버림)이다.

1	D	80,091,016	1,094,560	78,996,456	299
2	E	80,708,196	-	80,708,196	-
합계	160,799,212	1,094,560	159,704,652	299	

바. 피고 A은 2016. 3. 24. 부산지방법원 2016개회10293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7. 29.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. 피고 A이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로 원고, 채권의 내용으로 채권자 원고가 부산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법원은 채권자 이의신청 마감일을 2016. 8. 23.까지로 정하였는데, 원고는 2016. 8. 12. 이의를 제기하였다. 이후 위 법원이 2016. 11. 14.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고,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항고하였으나 2017. 1. 26. 항고기각 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.

사. 한편 피고 A은 2015. 10. 30.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제2항 기재 부동산(이하 위 부동산 지분 및 부동산을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매매대금 10,500,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. 11. 11. 접수 제3275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가 제1, 3, 5,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출한 금원에서 회수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확정지연손해금을 더한 159,704,951원(= 대위변제금 잔액 159,704,652원 + 확정지연손해금 299원) 및 그 중 위 159,704,652원에 대하여 변제일인 2016. 3. 2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6. 5. 16.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

1) 피보전채권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, 그 당시에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,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산은행 외에도 대부업체, 신용카드회사 등에 대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, 피고 A이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약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,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따라서 피고 A이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앞서 1)항에서 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고, 올라 제1 내지 4,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.

3) 소결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

취소하고,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기진석

별지